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2005. 11. 1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: 2005년 11월 7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다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9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17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5년 11월 10일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 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유 근)

가. 제안 이유

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 (2005.5.31) 및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(2004.12.31)됨에 따라 법규에 맞게 일부내용을 정비·보완하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환경보전활동에 공헌이 많은 구민·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안 제3조 제3호 “원인자 부담의 원칙”을 “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”으로 개정하고, 제5호 “자원·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” 신설(추가)
- 안 제4조 제7호 “친환경상품”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,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.를 신설(추가)
- 안 제5조 “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·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직무를 진다.”로 개정하고, 각 호를 신설(추가)
- 안 제10조의 제목 및 각 항의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“환경기본계획”을 “환경보전계획”으로 개정하고, 환경보전계획을 상위 법령에 맞게 “5년마다 수립”하여야 한다.를 “10년마다 수립”하여야 한다. “다만, 필요시에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”로 개정
- 안 제15조 제3항에 “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,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”를 신설(추가)

- 안 제21조 제2항에 “제1항의 규정에 …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.”를 “제1항의 규정에 …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.”로 개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 專門委員 이 남 식 )

-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(2005.5.31) 및 친환경상품 구매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(2004.12.31)됨 에 따라 법규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- 안 제3조 제3호 「원인자 부담의 원칙」을 「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 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」으로 개정하고, 제5호에 「자원·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」을 신설(추가)하며
- 안 제4조 제7호에 「친환경상품」이라 함은 “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”를 신설(추가)함.
- 안 제5조 환경보전을 위한 구의 책무에
  - 제1호 대기, 물,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
  - 제2호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  - 제3호 야생 동·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
  - 제4호 자원의 순환적 이용,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, 친환경상품 생산·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·감량에 관한 사항
  - 제5호 유해화학물질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
  - 제6호 지구온난화 방지, 오존층 보호,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  - 제7호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
  - 제8호 인간과 자연의 공존, 양호한 경관의 보전, 역사적·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
  - 제9호 「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」을 신설(추가)하며,
- 안 제10조에는 「환경 보전계획 작성주기를 5년」에서 「10년」으로 하고
- 안 제15조제3항을 「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주민·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」를 신설(추가).
-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·보완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8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- 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를 법규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과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,
-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상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도시환경과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며,
- 환경오염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민, 민간환경단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3조(기본원칙) 제3호“원인자 부담의 원칙”을 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”으로 개정하고, 제5호“자원·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” 신설
- 나. 제4조(정의) 제7호“친환경적상품”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,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.를 신설
- 다. 제5조(구의 책무) 전문을 “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·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 할 책무를 진다.”로 개정하고, 각호를 신설.
- 라. 제10조의 제목 및 각항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단서 신설

마. 제15조(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 
“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,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.”

바. 제21조(구민의 참여 등)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.  
“②제1항의 규정에 ...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.”를 “②제1항의 규정에 ...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.”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4(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) 제1항, 같은법 제12조(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)제1항, 같은법제14조의4(시·군·구환경보전계획의 수립등)제1항 및 같은법제37조(환경보전자문위원회) 제1항, 제2항
- 친환경상품구매에관한법률 제2조(정의), 같은법 제6조(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구매 의무) 및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3조 (기본원칙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.
- (2) 입법예고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따로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
- 5. 자원·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

제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"친환경적상품"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.

제5조(구의 책무)중 "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"를 "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"으로 하고, 동조에 제1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대기, 물,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
- 2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- 3. 야생 동·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
- 4. 자원의 순환적 이용,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, 친환경적상품 생산·구매 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·감량에 관한 사항
- 5.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
- 6. 지구온난화 방지, 오존층 보호,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
- 7.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
- 8. 인간과 자연의 공존, 양호한 경관의 보전, 역사적·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
- 9.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

제10조 제목 및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"환경기본계획"을 "환경보전계획"으로 하고, 동조 제1항중 "5년"을 "10년"으로 하며,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필요시에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,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2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·집행 및 환경오염감시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 (생략) 1. ~ 2. (생략) <u>3. 원인자부담의 원칙</u>  4. (생략) <신설>	제3조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<u>3.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 부담의 원칙</u>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자원·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</u>
제4조 (생략) 1. ~ 6. (생략) <신설>	제4조 (현행과 같음)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"친환경적상품"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.</u>
제5조(구의 책무) 구는 <u>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</u> 자연적·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 할 책무를 진다. <신설>	제5조(구의 책무) ..... <u>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</u> ..... 1. 대기, 물,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.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. 야생 동·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. 자원의 순환적 이용,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, 친환경적상품 생산·구매확대 및 폐기물의 처리·감량에 관한 사항 5.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. 지구온난화 방지, 오존층 보호, 산성비에 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.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환경기본계획) ①영동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동포구환경기본계획(이하 "환경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p>	<p>8. 인간과 자연의 공존, 양호한 경관의 보전, 역사적·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.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</p> <p>제10조(환경보전계획)①..... .....환경보전계획.....(이하 "환경보전계획"이라 한다)... 10년 .....</p>
<p>&lt;단서신설&gt;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다만, 필요시에는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환경보전계획.....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.....환경보전계획..... ④..... 환경보전계획 .....</p>
<p>제15조 (생략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15조 (현행과 같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 제21조(구민의 참여 등)① (생략)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·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.</p>	<p>③구는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구민,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.</p> <p>제21조(구민의 참여 등)① 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·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에 환경위원회를 둔다.</p>